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
----------	---

제출연월일 : 2006년 7월 12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 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총무과】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

【기업지원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 및 석유 대체연료판매업 등록요건 고시에 관한 사무”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현지성 및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군에 위임.

【수질관리과】

- 「먹는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 관련 사무”가 국가에서 도사무로 이양되어 규칙에서 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시·군에 위임.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일련번호 제21호 내지 제27호를 각각 일련번호 제22호 내지 제28호로 하고, 일련번호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일련번호 제15호, 제16호,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 업 지 원 과	15	○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등록, 변경등록 및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신고수리, 석유판매업(주유소)의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 가.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수리 나.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제14조, 동법시행 규칙 제17조, 제18조
	16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 등록 및 변경등록, 석유대체 연료판매업(주유소)의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 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나.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동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20	○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7조
	21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징수	동법 제41조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수질관리과 소관 일련번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질 관리과	7	○ 수처리제 제조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마.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바. 출입·검사·수거 등 사. 지도 및 개선명령 아. 사업장 폐쇄 조치 등 자. 폐기처분 등 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카. 청문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2항 동법 제18조제6항 동법 제21조 동법 제22조제3항 동법 제33조제2항 동법 제34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제1항, 제3항 동법 제51조제2항, 제3항 제4항

별표 2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총무과	1	○ 지방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 내 전보권 ○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83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기업 지원과	1~14	(생략)		기업 지원과	1~14	(현행과 같음)	
	15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등록, 변경등록 및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신고) 수리 가.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수리 나.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제3항 동법 제14조		15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등록, 변경등록 및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신고) 수리, 석유판매업(주유소 외)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 가.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수리 나.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제3항 동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1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 등록 및 변경등록 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나.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1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 등록 및 변경등록,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외)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 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나.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동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17~19	(생략)			17~19	(현행과 같음)	
	20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동법 제49조		20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7조
	<신설>	<신설>	<신설>		21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징수	동법 제41조
21~27	(생략)		22~2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 질 관리과	1~6	(생 략)		수 질 관리과	1~6	(현행과 같음)	
	<신설>	<신 설>	<신 설>		7	<u>○ 수처리제 제조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u>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수리 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마.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바. 출입·검사·수거 등 사. 지도 및 개선명령 아. 사업장 폐쇄 등 자. 폐기처분 등 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카. 청문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먹는물 관리법 제18조 제2항 동법 제 18조 제6항 동법 제21조 동법 제 22조 제3항 동법 제 33조 제2항 동법 제34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 제1항, 제3항 동법 제51조 제2항, 제3항, 제4항

【별표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총무 과	1	○충청북도의회사무처직원중 지방5	지방공무원법	총무 과	1	○지방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지방공무원법
		급이하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제6조제2항			사무처 내 전보권	제6조제2항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자치법 제83조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판매업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조건부 등록 등) ①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하 이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 것을 조건으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②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 (과징금)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또는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철거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33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등) ①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등록의 취소 등)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 (과징금)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1호 내지 제3호·제10호 내지 제11호의 1에 각각 해당하는 때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제34조제1호 내지 제3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1에 각각 해당하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8조 (보고 및 검사)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 등·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호·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청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36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등)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4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42조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① 법 제34조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7조제2항·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중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각각 “법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보고, 제18조제5항중 “법 제14조제5항 단서”는 “법 제35조제5항 단서”로 보며, 제19조중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는 “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로 본다.

제4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①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관련)

1.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다. 주유소의 등록요건

구분	지역	서울특별시	기타지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주유기 다. 공중화장실 라.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 설치		4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 일 것 4대 이상일 것 1개소 이상일 것	4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 일 것 2대 이상일 것 1개소 이상일 것
		주유소인 석유판매사업자가 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석유제품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비상표제품은 하나의 공급자 제품으로 본다.	
2. 기타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이 도시계획·도로사정·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외의 사항(주유소간 거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비고 : 공중화장실의 유치·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

나. 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등록요건

구분	지역	전	국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나. 주유기 다. 공중화장실 라.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 설치		2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 일 것 1대 이상일 것 1개소 이상일 것	
		석유대체연료판매사업자가 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석유대체연료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비상표제품은 하나의 공급자 제품으로 본다.	
2. 기타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이 도시계획·도로사정·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등록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외의 사항(주유소간 거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비고 : 1. 공중화장실의 유치·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석유판매업(주유소)와 동일 장소에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을 하는 경우 별도의 화장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먹는물관리법】

제18조(영업의 허가 등) ①(생략)

②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⑤ (생략)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营业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 营业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
2. 营业을 하고자 하는 자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3. 营业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인 때
4.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营业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같은 업종의 营业을 하고자 할 때
5.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营业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장소에서 먹는샘물제조업 또는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할 때
6. (삭제)
7. 地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먹는샘물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영업의 승계) ①~②(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①(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출입·검사·수거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물 관련영업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제품·용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지도 및 개선명령) ①(생략)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조시설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먹는물관련영업자 또는 부담금 증명표지의 제조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폐쇄조치 등) ①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 또는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그 사업장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그 사업장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폐기처분 등) ①(생략)

②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한 먹는샘물 또는 수처리제나 그 용기·포장등과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생략)

제40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수처리제제조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법인의 임원중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
 - 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3. 제18조제1항 후단, 동조제2항 후단, 동조제3항 후단, 동조제4항 후단,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5.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을 판매한 때
6.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한 때
7.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또는 제2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때
8. 제36조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등을 참작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1의2. 제2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 취소

2.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제43조(과징금처분) ①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생략)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1조(과태료)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생략)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수처리제제조업 등록) ① (생략)

②법 제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품목
3. 제조원료

제15조(허가의 취소 등)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한다.

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①시·도지사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

제9조(영업의 허가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수처리제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설명서

3. ~ 5. (생략)

②법 제18조 및 영 제4조 내지 제6조,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을,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휴업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영업의 승계)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위한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자가품질검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생략)
2. 수처리제제조업자의 경우 : 생산품목별 월 1회이상(검사항목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의한다)

3. (생략)

제30조(수거 등) ①법 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먹는샘물·수처리제등을 수거 또는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수거·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폐쇄·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개선기간) ①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14조·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②환경부장관,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35조의2(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이라 함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 제1호 다목 내지 라목, 제2호(나목을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을 말한다.

제36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②시·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